

資

料

食品製造營業許可기준 改正

調 査 部

보건사회부고시 제16호

식품 제조영업 허가 기준 개정

보건사회부고시 제34호(75.9.1) “식품제조영업 허가기준”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78. 5. 4.

보건사회부장관

제 1 조 중 “식품위생법”을 “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 4 조 중 “제 6 호”를 “제 8 호”로하고, 제 6 호 및 제 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업종 중 보존음료수 제조업과 두부류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목을 충족하였다고 당해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가. 기히 허가된 국내의 동일 업종의 상급수준의 시설 규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설 규모에 해당된 것으로서 공정히 자동화되어 있을 때

나. 생산원가의 절감으로 인하여 시중 판매 가격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때

다. 완전한 위생시설을 구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

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하여 국민영양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

라. 규격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판의 검정을 거친자가 규격기준이 마련되었을 때

마. 식품위생법 제19조 제 1 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일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확보하고 있을 때

바. 원료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갖추었을 때

7. 낙도, 오지 등 특수지역에 있어서 식품의 수급 조절상 신규허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당해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(두부류 제조업에 한한다)

8.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有害食品 追放하여 明朗社會 이룩하자